



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에 과테말라 가입

- 1월 9일(현지시간 1월 8일) 한국과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이 협정문에 정식 서명
- 한-과테말라 간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로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(GDP) 0.02% 증가, 소비자 후생 1.87억 달러 증가 기대(발효 후 5년 내, 누적)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1월 9일(현지시간 1월 8일) 과테말라 현지에서 ‘과테말라의 한-중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가입의정서’에 정식으로 서명하였다고 밝혔다. 알레한드로 잠마테이(Alejandro Giammattei) 과테말라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고, 중미 측은 마리오 부카로(Mario Bucaro)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하였다.

* 금번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으로 기존 중미 국가와의 FTA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, 기존 중미 5개국도 한-중미 FTA의 당사국으로서 가입의정서 공동서명 및 비준 필요

서명식에 앞서 한-중미 FTA 당사국인 한국과 중미 5개국(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파나마)은 한-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하였다.

과테말라는 한-중미 FTA 협상당시(‘15~’16년) 참여국이었으나,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서 이탈하였고, 이후 ‘21.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약 2년만인 작년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다.

* 한-중미 FTA 발효연도 : (‘19.10) 니카라과, 온두라스, (‘19.11) 코스타리카, (‘20.1) 엘살바도르, (‘21.3) 파나마, (‘24년중 비준 및 발효 추진) 과테말라

이번 정식 서명은 협상 타결 이후 한국, 과테말라 및 다른 중미 5개국이 각국의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,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 국가별 비준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.

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-중미 FTA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-중미 FTA가 최종 완성되게 된다. 과테말라는 우리 교민 약 6천 명, 150여 개 기업(섬유·의류 등)이 현지 진출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, 앞으로 양국 간 무역·투자·인적교류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, 한-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에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(GDP)가 0.02% 증가하고, 국내 소비자의 후생이 약 1.87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.

우리나라는 과테말라로부터 커피, 바나나, 니켈, 구리, 알루미늄, 의류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하고, 자동차, 면사·편직물 등 의류 원단, 석유 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, 양국이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양국 간 교역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.

과테말라는 6,677개(전체 95.7%)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며, 편직물(현 기준관세 0~10%), 타이어(5~15%), 공기여과기·제동장치·서스펜션 등의 자동차부품(10%) 등 3,927개(전체 56.3%)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, 타이어튜브(5%), 섬유사(5%), 음향기기(15%)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 관세를 철폐한다.

* 면사(5%), 편직물(0~10%) 관세철폐에 따라 원단 수출 후 의류를 수입하는 양 국간 섬유·의류 공급망 강화 기대

우리는 11,673개 품목(전체 95.3%)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, 사탕수수당(현 기준관세 3%), 커피(볶은 것 8%, 볶지 않은 것 2%), 당밀(3%), 면직물(10%) 등 9,791개(전체 80%)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, 바나나(30%)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 철폐한다.

아울러, 한-중미 FTA에 과테말라가 가입함으로써 양국 간 2002년에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, 한-중미 FTA의 투자자 보호규범이 적용되며,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등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되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현지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“과테말라는 인구·경제규모 측면에서 중미지역의 허브국가 일 뿐 아니라 미국, 멕시코, 유럽연합(EU)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북미·유럽연합(EU)지역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”고 강조하고, “올 한해 영국,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, 핵심 광물·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·아시아 등 신흥국과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통상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(EPA,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)을 촘촘하게 추진하여 우리 기업이 뚫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계속 넓혀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이행과	책임자	과 장 고 현 (044-203-5750)
		담당자	사무관 박재형 (044-203-5754)
			사무관 심주영 (044-203-5752)

참고1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의정서 정식 서명 개요

1 서명식 개요

- (목적) 과테말라*의 한-중미 FTA 가입을 위한 제2차 한-중미 FTA 공동 위원회 개최 및 한·중미 6개국간 가입의정서 정식 서명

* 한-중미 FTA 원협상국이었으나, 상품양허 및 원산지 이견 등으로 이탈

- (일시/장소) '24.1.8(월)(현지시간)/ 과테말라시티 국립문화궁전

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

- (시장접근 개선)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와 FTA를 통해 전체 품목 중 과측 95.7%, 우리측 95.3% 관세 철폐로 교역 확대 기대

- 과측은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·섬유*·철강 등 관세를 철폐하고, 우리측은 커피(관세 2~8%), 의류(13%) 등의 관세를 철폐

* 편직물(기준관세 10%), 순면사(5%) 등 현지 진출 한국 섬유·의류 기업에 필요한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양국간 공급망 강화

- 현지 교민 약 6천명, 150여개 기업(섬유·의류 중심)이 현지 진출 및 지사 운영 중

- (투자자보호) 기존 한-과 투자보호협정('02년 체결)은 종료되고 한-중미 FTA 적용으로 우리 투자자 보호 수준 강화*

* 한-중미 FTA상의 설립전 투자 보호, 경영진 국적요건 제한 금지 등 높은 수준 투자보호 및 자유화 규범 적용

- (북중미 진출 확대) 미국·멕시코와 FTA 체결, 중미공동시장 가입 등 과테말라의 잇점을 활용, 북중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 가능

※ (참고)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경제적 영향평가 결과, 우리측 실질 GDP 0.02% 및 소비자 후생 1.87억 달러 증가 전망(발효후 5년간 누적)

3 향후 계획

- 금년내 국회 비준동의 요청 및 발효 추진('24.하, 잠정)

참고2 한-과테말라 협정문 주요 내용

□ (상품) 전체 품목 중 과측 95.7%, 우리측 95.3% 관세 철폐

* 우리는 對중미 5개국 평균(95.6%) 대비 낮은 수준, 과측은 중미(95.4%) 대비 높은 수준 개방

<한-중미 FTA 국가별 상품양허 비교>

중미측 對한국 관세철폐	품목수	엘 95.1%	코 95.2%	파 95.3%	온 95.6%	과 95.7%	니 95.9%
	수입액	온 93.2%	코 98.0%	엘 98.1%	과 98.5%	니 99.1%	파 99.3%
우리측 對중미 관세철폐	품목수	과 95.3%	온, 엘 95.5%		파, 코 95.6%		니 95.9%
	수입액	온 98.7%	파 99.5%	과, 코, 엘, 니 100%			

□ (원산지 규범) 한-중미 FTA 협정문상 규범 및 원산지기준 적용

업종	품목별 원산지 기준 주요 내용
섬유·의류	대부분 원사기준으로 설정하되, 완성의류 품목에 대해 중미 4개국(파나마, 니카라과, 파나마, 코스타리카)와 같이 역외산 원사 및 원단 사용 허용 ↔ 엘살바도르는 완성의류에 대해서도 원사기준 적용
기계, 전자·전기	세탁기, 냉장고 등 우리 핵심 관심품목 중심으로 신축적인 6단위 세번 변경 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(40%)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
자동차	완성차는 부가가치 기준(40%)으로 하되, 자동차 부품(기어박스, 차축 등)은 4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업계 편의 제고

□ (서비스·투자) 한-중미 FTA 협정문상 서비스·투자 규범 적용

○ (서비스) WTO GATS 플러스(+) 수준의 시장 개방

* 특히 우리측 관심분야인 건설·유통·통신·엔터테인먼트 분야 시장개방 확대 기대

○ (투자) 기존 한-과테말라 투자보호협정('02년 체결) 대비, 높은 수준의 투자보호 및 자유화* 규범 적용

* 이행요건 부과 금지(국산부품 사용 및 기술이전 요구 등), 경영진에 대한 국적 요건 제한 금지 등

□ (정부조달) 한-중미 FTA 협정문상 정부조달 규범 적용

○ WTO 미가입국인 과테말라의 정부조달 시장을 우리에게 개방

참고3 한-과테말라 상품양허(관세철폐) 세부 내용

□ 과테말라의 관세 철폐

- 한국에 대해 자동차·IT부품·섬유·철강 등을 포함 전체 품목 중 95.7%(6,677개)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
- 편직물(기준관세 10%), 순면사(5%) 등 현지 진출 한국 섬유·의류 기업에 필요한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
- 우리의 對과테말라 1위 수출품목인 자동차(기준 관세 0%)의 유지·보수에 필요한 한국산 자동차 부품(5~20%)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

< 과테말라의 對한국 관세철폐 주요 품목(SAC기준)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>

(단위 : 개)

구 분	품목수	비중	주요 품목 (기준 관세율, %)
양허 포함	6,677	95.7%	
즉시 철폐(A)	3,927	56.3%	편직물(10), 순면사(5), 타이어(5~15), 기타직물(10), 자동차부품(10) 등
유관세	468	6.7%	편직물(5,10), 순면사(5), 타이어(5~15), 기타직물(10), 자동차부품(10), 기타섬유제품(10~15) 등
무관세	3,454	49.5%	승용차, 화물차, 합성수지, 제트유, 등유, 등
3년 철폐(B)	13	0.2%	타이어튜브(5), 가죽벨트(15), 해바라기씨유(5), 낙화생유(5) 등
5년 철폐(C)	757	10.9%	섬유사(5), 기타정밀화학(5), 면사(5), 자동차부품(5~10), 전선(5), 음향기기(15), 어묵(15) 등
7년 철폐(D)	10	0.1%	잉크(10), 기타고무제품(5), 화장품(15), 자전거부품(5~10), 무기류(10) 등
10년 철폐(E)	1,583	22.7%	축전지(5~15), 인쇄종이(10), 탄약(15), 무기류(15), 자동차부품(5~15) 등
12년 철폐(F)	17	0.2%	합성수지제가방(15), 알루미늄구조물(15), 인쇄용지(10), 문구(10) 등
15년 철폐(G)	328	4.7%	의약품(5), 플라스틱제품(5,10), 신발(15) 등
16년 철폐(H)	27	0.4%	노트북(15), 아연도강판(5), 냉방기(15), 소금(15) 등
19년 철폐(I)	20	0.3%	기타종이(15), 아연도강판(15) 등
양허 제외(X)	297	4.3%	플라스틱제품(10~15), 사과주스(15), 시멘트(5~10), 신발(15), 치즈(15) 등
전 체	6,974	100.0%	

□ 한국의 관세 철폐

- 과테말라에 대해 커피·바나나·의류 등을 포함 전체 품목 중 95.3%(11,673개)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
- 과테말라에서 수입되는 커피(기준관세 2~8%), 의류(13%), 면직물(10%) 등에 대한 관세가 협정문 발효 즉시 철폐
- 바나나(30%), 레몬(30%) 등 일부 과실류는 5년내 관세가 철폐되며, 일부 냉동채소(27%)는 7~10년에 걸쳐 관세 철폐

< 한국의 對과테말라 관세철폐 주요 품목(HSK2015기준) 및 최종 관세철폐 수준 >

(단위 : 개)

구 분	품목수	비중	주요 품목 (기준 관세율, %)
양허 포함	11,673	95.3%	
즉시 철폐(A)	9,791	80.0%	사탕수수당(3), 커피(볶은 것 8, 볶지 않은 것 2), 당밀(3), 면직물(10) 등
유관세	7,835	64.0%	여성·남성의류(13), 면직물(10), 기타메리야스(10), 완구(8), 면사(8) 등
무관세	1,956	16.0%	연광, 철스크랩, 알루미늄, 아연광 등
3년 철폐(B)	180	1.5%	티셔츠(13), 의류 벨트(13), 면사(8) 등
5년 철폐(C)	587	4.8%	바나나(30), 조주정(8), 신발(13) 등
7년 철폐(D)	168	1.4%	냉동채소(27), 사탕무당(3), 연어(냉동)(10) 등
10년 철폐(E)	397	3.2%	냉동채소(27), 목재식탁용품(8), 마태차(25) 등
12년 철폐(F)	438	3.6%	혼합주스(50), 파스타(5), 계피(8) 등
15년 철폐(G)	89	0.7%	잎담배(20), 포도주(15), 상추(45) 등
16년 철폐(H)	21	0.2%	토마토(45), 소스(45), 견과류(45) 등
19년 철폐(I)	2	0.0%	만다린(144), 돼지고기 넓적다리살(25) 등
양허 제외(X)	554	4.5%	천연꿀(244), 치즈(36), 참깨(630), 참기름(630), 옥수수(630), 냉동소고기(40), 기타 새우(냉동)(20) 등
협정 배제(Y)	16	0.1%	쌀(513), 멥쌀(513), 현미(513) 등
전 체	12,243	100.0%	

참고4 한-과테말라 교역 및 주요 교역품목

□ 교역 현황

단위 : 백만불, 전년대비 %

구 분		'18	'19	'20	'21	'22
수 출	금액	237	222	203	384	323
	증가율	△ 1.7	△ 6.3	△ 8.6	88.8	△ 15.9
수 입	금액	67	64	78	138	131
	증가율	△ 40.2	△ 4.5	21.9	77.2	△ 5.0
무역규모		304	286	281	522	454
증가율		△ 13.9	△ 5.9	△ 1.8	85.8	△ 13.0
무역수지		170	158	125	246	192

□ 주요 교역 품목(2022년 기준)

단위 : 백만불, 전년대비 %, MTI 4단위

순위	수 출(한→과)			수 입(과→한)		
	품목명	금액	비중	품목명	금액	비중
1	승용차	39	12.1	커피류	68	51.9
2	경유	38	11.8	니켈광	14	10.7
3	화물자동차	32	9.9	동괴및스크랩	10	7.6
4	합성수지	29	9.0	과실류	10	7.6
5	의약품	19	5.9	편직제의류	10	7.6
6	면사	16	5.0	알루미늄괴및스크랩	9	6.9
7	건설중장비	14	4.3	기타 전기부품	5	3.8
8	기타정밀화학제품	13	4.0	고철	2	1.5
9	염료	13	4.0	종자류	1	0.8
10	편직물	11	3.4	직물제의류	1	0.8
	10대 품목 합계	224	69.3	10대 품목 합계	130	99.2
	전체 합계	323	100	전체 합계	131	100